

# 김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626호
----------	--------

제출년월일 2025. 5. .  
제출자 김포시장

## 1. 제안이유

- 조례의 정의와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및 구성에 대해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정의규정 정비 (안 제2조)
- 나. 시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에 단서 조항 신설 (안 제4조제2호)
- 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추가 (안 제12조)
- 라.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추가에 따른 배치요원 및 자격 정비 (안 제13조)

## 3. 참고사항

-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나. 관계 법령 및 현행 자치법규 : 붙임
-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라.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생략(「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 2) 부서협의결과
    - 가) 규제사전심사 결과 : 해당 없음
    - 나) 성별영향분석 평가 : 해당 없음
    - 다) 부패영향 평가 : 원안 동의
  - 3) 중앙 및 도 관련부서
    - 가) 중앙부처 : 교육부 영유아정책총괄과
    - 나) 경기도 : 보육정책과

## 김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뜻은 다음과 같다”를 “정의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의결한다”를 “심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중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제12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상담·치료연계 지원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육전문요원”을 “보육전문요원 등”으로, “제14조 및 제15조에”를 “제14조부터 제16조의2까지의 규정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보육전문요원”을 각각 “보육전문요원 등”으로 한다.

① 센터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등을 둔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아동보육과
입 안 자	실·과·소장 성 명	아동보육과장 이 영 란
	팀 장 직위·성명	보육정책팀장 권 미 진
	담 당 자 성명·전화	지방사회복지주사 류 소 령(☎5324) 지방사회복지주사보 김 원 태(☎5323)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p> <p>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p> <p>3. “어린이집 “이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p> <p>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p> <p>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p> <p>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p>	<p>제2조(정의) -----</p> <p>정의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p>제4조(기능) -----</p>



임명하고 시장에게 보고한다.

④ (생략)

-----.

④ (현행과 같음)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전문 컨설팅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3.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제공
4.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상담·치료연계 지원
5. 제9조의2에 따른 보호자 교육 지원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육교직원 교육 제공
  - 가. 보육교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 나. 제23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
  - 다. 「아동복지법」 제26조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 6의2.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지원 및 관리
7.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8.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 보육교직원의 정서적·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 및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상담·치료연계 지원 업무를 하는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 등을 둔다.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국공립

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기부채납 받거나 무상임차 등 사용계약을 통하여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삭제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한 자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① 중앙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이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1의2. 법 제14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명단 공표에 관한 사항
2.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평가에 관한 사항
- 3의2. 삭제
4. 그 밖에 보육 관련 업무의 위탁 등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삭제
2.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이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다만,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중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육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4.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6. 법 제38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7. 삭제
8. 삭제
9. 법 제52조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 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상근(常勤)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1. 별표 1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보육전문요원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6조(상담전문요원의 자격)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상담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상담·심리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상담 업무와 관련하여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제16조의2(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자격)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상심리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
5.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①**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⑧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유서

2.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집의 원장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⑨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김포시 보육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 보육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운영과 김포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통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7.18.>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

제3조(보육정책위원회 설치) 법 제6조에 따라 김포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7.18.>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9.4.17>

제5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11.16.>
-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관계 공무원의 경우 보육업무 담당국·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19.4.17., 2022.11.16.>

1. 보호자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2. 보육전문가
3. 관계공무원
4. 어린이집 원장
5. 보육교사 대표

③ 위원의 구성비율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제3항을 따르고,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9.4.17>

#### 제6조(위원의 임기)

-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9.4.17>
-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4.17.,2022.11.16.>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회의)

-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개정 2022.11.16.>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2.11.16.>
-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7.9.27., 2022.11.16.>
- ⑤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 제8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개정 2022.11.16.>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4.17]

제8조의3(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제5조2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4.17]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4.7.18.>

1. 관련부서의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
2.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제10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9.29.,2022.11.16.>

### 제3장 육아종합지원센터 (개정 2014.2.12)

제11조(설치)

① 시장은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상담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개정 2014.2.12>

② 센터의 설치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2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2.11.16.>

제12조(기능)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신설 2014.2.12)

1의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개정 2014.2.12)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개정 2014.2.12)

7.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신설 2014.2.12)

8.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신설 2014.2.12)

9.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지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4.2.12)

② 센터는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어린이집과 보육수요자에 대하여 지역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13조(구성)

-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 등을 둔다.
- ②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다.<개정 2022.11.16., 2024.7.18.>
- ③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은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을 공개모집하여 임명하고 시장에게 보고한다.
- ④ 센터에는 영유아 및 아동보육과 관련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사, 영유아 및 아동보육 전문가 등의 전문인력을 상근 직원으로 두거나 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의 위탁)

-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보육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시장은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한 후 한 차례만 재계약 할 수 있다.<개정 2022.11.16.>
- ③ 시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시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업무 위탁의 신청절차, 신청서류, 수탁기관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센터 운영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법 제36조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수탁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수탁자가 제12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4.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제16조(주민의견 수렴) 센터의 장은 센터의 운영과 운영에 관한 계획수립에 있어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전문가, 보육교사, 보호자 등 그 밖에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17조(센터의 재정)

-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개정 2022.11.16.>
- ② 센터 직원의 보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른다.

#### 제17조의2(이용료 등) <신설 2022.11.16.>

- ① 시장은 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별표 1과 별표 2의 범위에서 시설 사용료 및 프로그램 이용료(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전

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징수한 이용료 등은 센터 운영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여 운용해야 한다.

#### 제17조의3(이용료 등의 감면 및 반환) <신설 2022.11.16.>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1. 시설 사용료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경우: 전액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액

##### 2. 프로그램 이용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전액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자녀: 전액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전액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전액

마. 「김포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50퍼센트

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및 자녀: 50퍼센트

사.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50퍼센트

아.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50퍼센트

②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용료 등을 감면, 반환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장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 제18조(설치)

①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 각 호에 따른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9.4.17>

② 시장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아·장애아 전문 및 통합 어린이집, 야간 어린이집, 방과후 어린이집, 시간 연장형, 다문화 등 특수 어린이집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하여 어린이집이 공공청사 및 복지회관 등에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명칭) 시립어린이집 명칭은 “시립○○어린이집”으로 한다.

제20조(업무) 시립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입소 영유아의 보호에 관한 사항

2. 영유아의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시립어린이집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보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1조(위탁운영)

- ① 시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을 최초 위탁시에는 공개경쟁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른다.

제22조(위탁계약)

-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원장의 잔여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3년이상 5년 이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③ 수탁자는 시설 및 보육아동의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시설가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시장은 재 위탁의 경우 운영실태 및 보육의 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개경쟁 모집시 기존 수탁자도 참여할 수 있다.

제23조(운영재정) 시장은 위탁 운영하는 시립어린이집에 필요한 경비를 법령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할 수 있다.<개정 2017.9.27>

제24조(수탁자의 의무)

- ① 수탁자는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규정과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하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수탁자가 결정될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신규 수탁자와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수탁 협약서에 따른다.

제25조(위탁의 취소)

- ① 시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수탁자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9.4.17>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시는 문서로 취소사유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기존 제2항 삭제, 제3항에서 이동 2019.4.17>
- ③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기존 제4항에서 이동 2019.4.17>

제26조 <삭제 2017.9.27>

제27조(지도감독)

- ① 시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 실태를 년 1회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사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지도점검 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문서로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이행 결과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제28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2.11.16.>

**제5장 비용** <개정 2022.11.16.>

제29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2. 보육교사(대체교사 포함) 인건비
3. 교재·교구비 <개정 2015.9.30.,2022.11.16>
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 <개정 2015.9.30.,2022.11.16.>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개정 2015.9.30.,2022.11.16>
6.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신설 2015.9.30)[중전의 29조6호는 29조5호로 이동<2015.9.30>]
7. 장애아 보육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중전의 29조7호는 삭제, 29조 8호에서 이동 <2015.9.30>]
8.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개정 2015.9.30)
9.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비 (개정 2015.9.30)
10. 2년 이상 어린이집에 근무한 보육교직원에 대한 근속수당 [중전의 29조10호는 삭제, 29조 11호에서 이동<2015.9.30>]
11. 삭제<2022.11.16.>
12.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시장이 어린이집 운영 및 영유아 보육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신설 2022.11.16.>
13. 삭제<2022.11.16.>
14. (삭제 2015.9.30)

제30조(보조금의 반환) 보조금을 지급받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센터의 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이미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1.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의 목적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 4.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한 경우

제31조(정산보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 목적 내에서 성실하게 집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6., 2021.7.2.)

### 제6장 지도 및 감독

제32조(지도 감독과 명령) 시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제33조(보고와 검사)

① 시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② 시장은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문서로 요구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시장은 법 제44조에 따라,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할 때는 위반의 내용을 감안하여 어린이집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4.7.18.>

### 제7장 보칙

제35조(준용)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전문개정 2017.9.27]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